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가입 기간 6개월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신청 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여부·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 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및 일정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화양지구 9-2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 지상 29층 8개동 총 85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단위: m², 세대)

구분	주택형	타입	세대별 계약면적(m ²)				배정세대수 (429세대)	입주예정 시기
			주거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계약면적		
민영 주택	074.9695A	74A	74.9695	24.0552	99.0247	150.9427	50	26년 11월 (예정)
	074.9545B	74B	74.9545	24.3154	99.2699	151.1529	50	
	084.9836A	84A	84.9836	26.1430	111.1266	169.9517	218	
	084.9120B	84B	84.9120	27.7069	112.6189	171.3944	56	
	084.9205C	84C	84.9205	27.1556	112.0761	170.8574	55	
	122.6717A	122A	122.6717	41.8578	164.5295	249.4420	-	
	122.2046B	122B	122.2046	42.2165	164.4211	249.0103	-	
합계			-	-	-	-	429	

※ 상기내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 승인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관추천 유형별 배정세대 내역

(단위: m², 세대)

구분		74A	74B	84A	84B	84C	122A	122B	계	
기관추 천	장애인	경기	1 (5)	1 (5)	6 (30)	1 (5)	1 (5)	-	-	10 (50)
		서울	1 (5)	-	3 (15)	1 (5)	1 (5)	-	-	6 (30)
		인천	-	1 (5)	3 (15)	1 (5)	1 (5)	-	-	6 (30)
	국가유공자		2 (10)	2 (10)	8 (40)	2 (10)	2 (10)	-	-	16 (80)
	장기복무제대군인		2 (10)	2 (10)	8 (40)	2 (10)	2 (10)	-	-	16 (80)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2 (10)	2 (10)	8 (40)	2 (10)	2 (10)	-	-	16 (80)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2 (10)	2 (10)	8 (40)	2 (10)	2 (10)	-	-	16 (80)
합계		10 (50)	10 (50)	44 (720)	11 (55)	11 (55)	0	0	86 (430)	

※ 2023.11.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는 예비당첨자입니다.

■ 분양 일정(예정)

구분		일자	참고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2024. 02. 16. (금)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홈페이지 (https://www.prugio.com/hc/2024/pyeongtaek)
주택전시관 개관		2024. 02. 23. (금)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651-109
특별공급 접수일시	인터넷청약	2024. 02. 26. (월) 09:00 ~ 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사이트 청약 접수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2024. 03. 06. (수)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조회 가능

- ※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중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정부 방침에 따라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접수 마감시간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 접수중이라도 접수가 종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주택전시관에서 특별공급 방문 접수(10:00~14:00 / 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가능합니다. 주택전시관 방문 시 예약 후 입장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들도 특별공급 접수일에 반드시 청약신청 하셔야 됩니다.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선정 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02. 16.(금) 예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등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국가유공자 등,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애인) 선정하여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무주택 요건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 3 및 제4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청약자격 요건

- ※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평택시)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 02. 16.(금)]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한차례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 사업주체는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당첨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에 한해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계약취소, 통장 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단에 있어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및 분양권등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23.11.10.)에 따라 공시가격기준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셨을 경우에는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신청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모두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에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인과 세대원이 중복 청약하는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특별공급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타입 변경 등)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 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당첨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등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추후 공고예정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 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단, 공시가격기준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셨을 경우에는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
- 공급금액,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홈페이지 (<https://www.prugio.com/hc/2024/pyeongtaek>) 및 안내 자료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특별공급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자모집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필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 및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대표번호로 문의바랍니다.(오전 10시 ~ 오후 6시)

- 기타 문의 전화 : 031-683-0851
- 주택전시관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651-109
- 홈페이지 : <https://www.prugio.com/hc/2024/pyeongtaek>